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01월 28일

적량면장

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**	박** 1969-07-23	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월길	거주불명등록 2020-01-28